

외교부 통역 전문인력(전문임기제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외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외교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10개 직위, 총 10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영어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 ~ 2028.7.27.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서울)
일본어		1명		
중국어		1명		
러시아어		1명		
독일어		1명		
프랑스어		1명		
스페인어		1명		
아랍어		1명		
베트남어		1명		
힌디어		1명		

- ※ 하나의 지원코드만 지원 가능(복수 코드 중복 지원 불가)
- ※ 전문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영어	통역 전문인력	전문임기제 나급	○ 정상 포함 고위급 등 통역 및 의전 지원, 국내외 행사 통·번역, 각종 문서 번역 등 ○ 해당 언어 지역·국가 관련 사안 모니터링·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양자 및 다자 협력 업무 지원 기타 외교업무 및 행정업무 등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힌디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행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6.12.18.)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통역 전문인력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동시통역사 등 지원 언어를 활용한 통역 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학과)] 지원 언어 관련 학과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 [예]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6.12.18.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지원 코드에 따라 최종(면접)시험일이 다르므로 유의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 제9호 양식 활용(별지 제9호 경력(재직)증명서상 직인 또는 발급자 서명 없을 시 불인정)

- 동일 기관에서의 근무기간 내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경력증명서 작성

* [예] 22.1.1.~25.12.31.간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A업무를 수행하다 B업무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에 “△기관 A업무(22.1.1.~23.12.31.), △기관 B업무(24.1.1.~25.12.31.)”로 구분하여 작성 / “△기관 A,B업무(2022.1.1.~2025.12.31.)”로 작성 지양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강의 경력의 경우 담당과목, 시수가 명시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인턴, 객원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담당업무, 업무수행 기간(또는 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3인 이상)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12.18.)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9.11.)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지원언어 통번역학 석사학위 이상 ○ 지원언어 구사능력(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21.9.12. 이후) 관련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9.11. 예정)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 외의 이력(어학성적, 학위 등)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충족 이전의 이력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

-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지원 언어 통번역학 석사학위 이상

- 지원한 언어를 전공으로 하는 통번역학 석사학위 이상
 - ※ [예] 한중 통번역학 석사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 [예] 한중 통번역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응시자격요건 학위①으로 응시한 경우,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통번역학 박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해당 응시자가 한중 통번역학 석사학위 보유시, 해당 석사학위는 우대 가능

○ 지원언어 구사능력

- 응시자가 지원한 언어에 한해 유효기간* 내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 인정)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시험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 가운데 서류접수 마감일('26.9.11.)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

※ 언어별 인정 가능한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은 “붙임3” 참조 / “붙임3” 목록 외의 어학시험 성적 제출시 불인정

- 아랍어, 베트남어, 힌디어는 FLEX 위탁시험 실시 및 동 시험 점수에 따라 차등배점

※ 희망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심사 전 실시 / 미응시 시 0점

○ 표창·상훈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21.9.12.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복수의 표창(상훈) 보유시, 최대 1개만 인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7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전문지식
 - (평가방식) 개별면접 이전 통·번역 테스트 및 개별면접(통·번역 과제물,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구체 사항은 면접시험 이전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9.1.(화) ~ 9.11.(금)	'26.9.9.(수) ~ 9.11.(금)	'26.10.16.(금)	'26.10.26.(월) ~ 11.6.(금)	'26.11.20.(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면접시험 일정]

일자	지원코드	일자	지원코드
10.26.(월)	영어	11.2.(월)	프랑스어
10.27.(화)	일본어	11.3.(화)	스페인어
10.28.(수)	중국어	11.4.(수)	아랍어
10.29.(목)	러시아어	11.5.(목)	베트남어
10.30.(금)	독일어	11.6.(금)	힌디어

※ 지원 코드에 따라 최종(면접)시험일이 다르므로 유의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외국어(영어 제외)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9. 9.(수) ~ 9. 11.(금)
 - 응시원서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퀵, 택배 접수는 받지 않음)
 - － 응시원서는 붙임4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응시번호"는 9.18.(금)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접수처 : (우)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3호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담당관실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겹봉에 '외교부 통역 전문인력(지원 언어 택1 작성)(전문임기제 나급) 응시원서 재증' 표기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4”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8호
	주민등록초본 1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추가제출)	○ 별지서식 제6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요시 별지서식 제9호 양식 활용 ※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 증명서상 직인 또는 발급자 서명 없을시 불인정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각 1부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권고

- 특히 재직중인 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재직)중인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 방법

- 응시자격요건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기준, 우대요건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하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제출서류의 진위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 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어(영어 제외)로 기재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9호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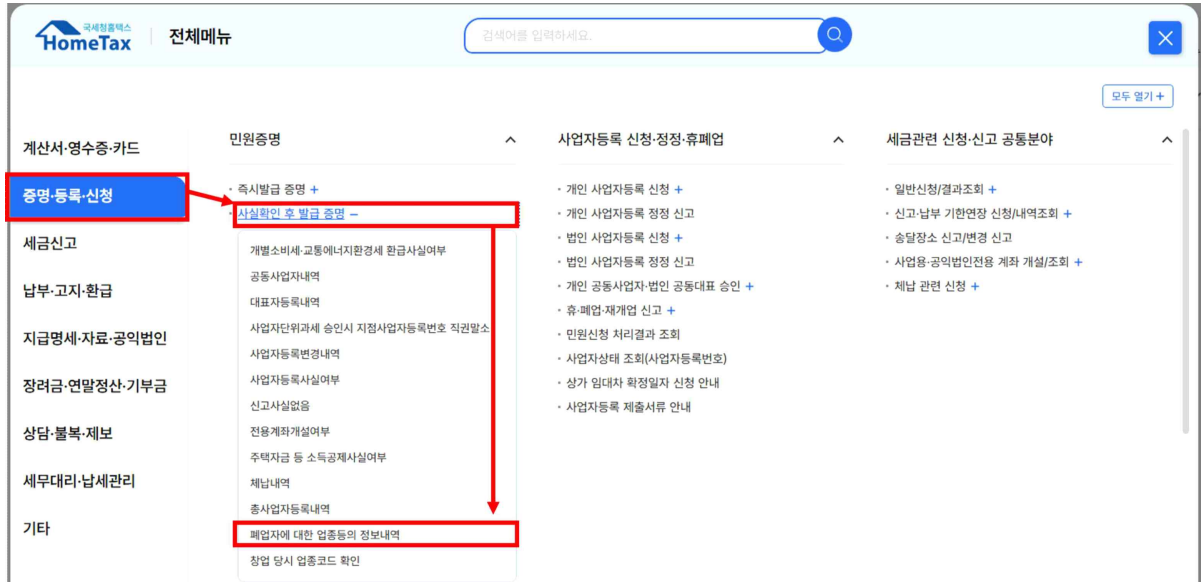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예정) : '26.11.23.(월) ~ 11.25.(수)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12.18.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2028.7.27.(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6,606	57,708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여타 수당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예. 면접시험일 등)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 판단하에 가입여부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외교부 인사운영담당관실(☎02-2100-7145/714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붙임 2. 직무기술서

붙임 3. 언어별 인정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목록

붙임 4. 제출서류 안내

붙임 5. 별지 서식. 끝.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시행일: 2026.10.22.)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시행일: 2026.10.22.)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영어	프랑스어	통역 전문인력	전문임기제 나급	언어별 1명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서울)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독일어	힌디어				

주요 업무	○ 정상 포함 고위급 등 통역 및 의전 지원, 국내외 행사 통·번역, 각종 문서 번역 등 ○ 해당 언어 지역·국가 관련 사안 모니터링·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양자 및 다자 협력 업무 지원, 기타 외교업무 및 행정업무 등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 ○ (직렬별 역량)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통·번역 능력, 양자 및 다자외교 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모니터링·조사·분석 및 문서작성 능력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해당 외국어 통·번역 지식 및 경험 ○ 해당 외국어권 지역·국가의 정치·경제·문화·역사 등 기본 지식
-------	---

응시 자격요건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동시통역사 등 지원 언어를 활용한 통역 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학과)] 지원 언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지원 언어 통번역학 석사 학위 이상 ○ 지원언어 구사능력(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관련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은 임용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언어별 인정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목록

⇒ 언어별로 인정 가능한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이 다르므로 유의

⇒ 응시자가 지원한 언어에 해당하는 아래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하여 우대

언 어		시 험 명
영어		FLEX
		TOEFL(PBT, CBT, IBT)
		TOEIC
		TEPS
제2외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힌디어 제외)	공통	FLEX
		SNULT
	일본어	JPLT
		JPT
	중국어	한어수평고시(신HSK)
	러시아어	TORFL
	독일어	괴테어학검정시험
	프랑스어	DELF/DALF
	스페인어	DELE
아랍어	FLEX 위탁시험 ※ 희망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전 실시	
베트남어		
힌디어		

붙임 4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1호)	○ 제출내역 체크 후 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 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A4 요약서 1매 + A4 5매 로 작성(총 6매 이내)
6.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전공분야 표시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추후 임용예정일(2026.12.18.)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6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첨부 - 미제출시 해당 학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필수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관련 서류가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 후 제출 필요

구 분	내 용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시 별지서식 제9호 활용)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u>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u>,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u>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u>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8.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9.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21.9.12. 이후)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10.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필 서명 필수
1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응시언어
		통역 전문인력	

■ 작성목록(총괄표) ※ 제출서류에 체크 표시(✓)

순서	제출서류	제출여부
①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포함)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 미제출
⑥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 제출 ☐ 미제출
⑦	학위논문요약서(석·박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 제출 ☐ 미제출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⑨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⑩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⑪	주민등록초본	☐ 제출 ☐ 미제출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⑬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제출 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않고 집게로 집어 제출, 양면인쇄 금지)**

위와 같이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 제출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원본)

외교부 장관 귀하

본인은 외교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통역 전문인력	
응시언어			
응시자격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통역 전문인력	
응시언어			
응시자격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원서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배부하지 않습니다.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이메일 또는 SMS문자를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전문임기제 나급 / 통역 전문인력
- ② 응시언어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언어(지원코드) 중 선택
- ③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유의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자격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

2. **미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⑦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통역 전문인력	응시 언어		응시 자격 요건	학위			성명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과)	13.1.1 ~ 17.4.30.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휴직)		과장 (4급)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5.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9.5.1~12.31.(○○휴직)	과장 (4급)	*운전직의 경우 '운행차종(인승)'기재 예) 대형버스(45인승)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취득일		학위종류

어 학 개 편	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 유효기간	
	아랍어, 베트남어, 힌디어 응시자 중 희망자에 한해 FLEX 위탁시험 실시 및 동 시험 점수에 따라 차등배점 예정이므로, 시험 응시 희망시 '응시', 불원시 '미응시'에 ✓ 체크 표기 ※ 희망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심사 전 실시 / 미응시 시 0점		응시 ☐	미응시 ☐
표 창 · 상 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		XX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언어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언어 택1 기재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은 앞장의 응시원서에 체크한 것과 동일하게 1개를 택하여 ✓ 체크

【 응시자격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학위요건 중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2년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3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를 기재(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과 동일하게 작성)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6.9.11.)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해당자에 한하여 전공·취득일·학위종류를 반드시 기재하고 학사·석사·박사 순으로 작성(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 (인정 학위) 지원 언어 전공 통번역학 석사학위 이상

어학 지원언어에 따라 해당자만 작성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응시자 : 유효기간 내 공인어학능력검정 성적 기재
 - ※ 복수의 성적 기재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 인정
 - ※ 어학성적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시험 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 가운데 서류접수마감일('26.9.11.)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
 - * 언어별 인정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은 '붙임3' 목록 참고 / '붙임3' 목록상 기재되지 않은 어학능력검정 시험 성적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아랍어, 베트남어, 힌디어 응시자 : FLEX 위탁시험 실시 희망 여부 체크 표기 * 미응시 시 0점

표창(상훈)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표창(상훈) 기재

- 표창(상훈)명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복수의 표창(상훈) 보유 시, 최대 1개만 인정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기타 증빙서류 제출 및 서명

-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이력서에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하단의 작성자 확인란(날짜, 성명, 서명)만 자필로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6. . .			
응시자 : (인)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응시자 : (인)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첨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table><tr><td colspan="2">발급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